

서 면 답 변 서

질의의원	우 강 호 의원	소 속	평창군의회
답 변 과	평창군수(환경복지과장)	일 자	질의:1999년 12월 14일 답변:1999년 12월 14일
회 의	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7차 예결특위		

질의요지

- 저소득층아동 지원기준 및 선정절차 (제6차 질의 보충자료)

선정기준

- 법정저소득층 아동 :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,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.부자가정의 아동은 100% 면제
- 기타 저소득층 아동 : 아래 기준에 의거 조사후 50% 보조

가 구 원 수	2인	3인까지	4인	5인이상
가구당월	'98 85만원까지	95만원까지	105만원까지	115만원까지
평균소득	'99 -	92만원까지	102만원까지	112만원까지
가구당 재산	3,200만원			

선정절차

조사신청(보호자) → 조사(읍면) → 조사결과에 의한 보조(군)

소득 및 재산조사 방법

- 소득조사 : 동거가족의 월평균 소득액은 연간소득액을 기준
- 지출조사 : 주거비(월세)의 경우는 전액, 의료비의 지출합계가 연간 240만원 이상인 자는 조사원이 증거서류 등에 의거 확인하고 월 평균 지출의 20%를 가구당 월 평균 소득에서 공제
- 재산조사 : 각종 관계공부 및 자료와 대조.확인하여 조사하고 재산액 산정기준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원칙으로 함
- 기 타 : 동거가족확인, 국민연금 전산자료 확인등

※ 저소득층아동 선정 기준에 부합되도록 엄격히 심사하고 있어 비대상자가 지원받는 경우는 없음.